
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도자료</h1>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<b>보다나온 정부</b>
	<b>배포일시</b>	<b>2018. 12. 3.(월) 총4매(본문2)</b>	
<b>담당부서</b>	자동차운영 보험과	<b>담당자</b>	• 팀장 박문수, 사무관 김현철, 주무관 임은숙 • ☎ (044)201-4760, 4871, 4873
<b>보도일시</b>		2018년 12월 4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3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택시·버스·화물차 등 사고 관련 민원서비스 빠르고 편리해진다

### 12.1자로 공제 민원센터, 손해배상진흥원으로... 민원 만족도 제고 기대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종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여 왔던 사업용 자동차 공제\*(운수사업자 보험) 민원센터를 12월 1일자로 『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』(소재지 서울 당산, 이하 “진흥원”)으로 이관하였다고 밝혔다.
  - \*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차량 보유자와 달리 운수사업자에게 책임한도가 없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토록 하여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토록 하고 있음
  -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는 택시·버스 등 6개 공제조합 총 85만대 사업용 자동차\* 사고 피해자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·운영되어 왔으나,
    - \* 택시(8.8만대), 개인택시(15.3), 버스(4.3), 전세버스(4.1), 화물(18.2), 렌터카(34.2)[18.6]
  -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공제 건전성 강화, 보상 관련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진흥원을 설립하고, 관련 업무의 이관을 추진해왔다.
- 이에 따라, 공제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공제조합의 보상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진흥원에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

빠르고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.

< 진흥원 민원 접수 방법 >

접수방법	접 수 처
우편(방문)	(07222)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, 2층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 공제민원센터
전화	1566-8539
팩스	070-7500-9609
전자민원	진흥원( <a href="http://www.tacss.or.kr">http://www.tacss.or.kr</a> ) 국민신문고( <a href="http://www.epeople.go.kr">http://www.epeople.go.kr</a> )

- 이번 공제 민원센터 이관으로 민원 전담인력이 4명에서 6명으로 확충되고, 향후 민원처리 시스템의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6개 공제 조합, 국민신문고 등과 연계되어 보상 서비스 수준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진흥원은 공제 민원센터 이관을 계기로 공제 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활용 지원,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업무 지원, 분쟁 처리 사례집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, 보상 서비스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자동차 공제 민원센터의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, 사고 피해자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 
자동차운영보험과 김현철사무관(☎ 044-201-487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참고1

#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개요

### □ 설립 목적 (자배법 제39조의3)

-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 수행

### □ 조직 및 운영(안)

- 원장, 3부(총 22명, 경영관리부, 공제감독부, 전략사업부)로 구성



임원	원장	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대표하고, 그 업무를 총괄
	이사	■ 주요업무 심의·의결
사업부	경영관리부	■ 이사회, 인사, 채용, 경리, 회계, 전산, 복리후생, 홍보 등
	공제감독부	■ 공제조합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, 공제분쟁· <b>민원 지원</b>
	전략사업부	■ 사업전략 수립, 손해배상·보험·공제 정책 및 제도개선 등

\* 감사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

### □ 주요 업무 (자배법 제39조의4, 영 제11조의2)

- 자동차공제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
-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수립·추진 지원
-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연구
-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  -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교육 및 홍보
  -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수집·관리
  -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한 정책 연구 지원

□ **법적근거**

-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60·61조, 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51조

□ **공제사업(여객법 제64조)**

-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
-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
-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·연구 사업

□ **공제조합 현황**

(‘18.6월말 기준)

구 분	택 시	개인택시	버 스	전세버스	화 물	렌터카
설립일자	'79.6.20	'93. 2. 1	'81.12.24	'97.12.24	'81.7.1	'12.11.15
설립근거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	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조 직	본부외 16개지부	본부 및 16개지부	본부 및 16개지부	본부 및 16개지부	본부 및 15개지부	본점
근무인원	488명	437명	440명	182명	630명	290명
가입대수	88,547	153,580	43,162	40,753	181,900	342,051
수입분담금 (보험료, 백만원)	130,883	109,396	106,787	41,805	240,213	148,338

\* 광역 시·도별로 분담금(보험료), 공제금(보험금)을 자체적으로 산정·결정